

심 사 보 고 서

1.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(제1469호)



고 성 군 의 회
(총무위원회)

4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령

- 「지방공무원법」
-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

나. 예산조치

- 순수 증원분(2명) 2014년 당초예산 요구
- 직종개편에 따른 예산은 상호 상계 처리하므로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단, 별정직에서 연구직으로의 변경분만 2014년 추경 반영예정(2명)

다. 비용추계내역

구분	정원증감	소요비용(천원)	산출내역(천원,명)
계	2명 증	증 50,000	
일반직(순수증원)	9급 (증 2명)	증 40,000	20,000 * 2명
별정직	8급상당(감 2명)	△ 70,000	35,000 * 2명
연구직	연구사(증 2명)	증 80,000	40,000 * 2명

라. 기 타

- 1) 입법예고 : 생략
- 2) 신·구조문대비표 : 별첨
- 3) 합 의 : 기획감사실(예산담당)
- 4) 비용추계서 : 붙임(미첨부 사유서) 첨부

5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환경변화로 직종 간 업무성격·인사관리 등이 유사해졌으나 직종 간 이동 시 신규채용 형태를 거치는 등 인사관리에 비효율적이었던 현행 「지방 공무원법」의 개정예 따라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 책정기준과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개정하고, 이들 정원책정기준에 따라 기관 및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
-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.

6. 질의 및 답변 요지

- 문 : 2명 증원되어 있으면 조례부터하고 2명 증원시켜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?
- 답 : 지금 그 부분은 정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.
638명 정원으로 현재 그대로 관리하고 있습니다.
- 문 : 공무원을 증원시키는 것은 제가 이해하겠는데 이렇게 굳이 지방 재정도 좋지도 않은데 공무원 수는 자꾸 늘어나는고.. 물론 상위법 안에서 하겠지만..
- 답 : 이것도 지금 복지업무가 자꾸 증가되다보니까 현재 복지직으로서도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.
그래서 보건직이 복지분야라든지, 일반행정직이 복지분야에 가서 근무하는 직원이 많습니다.
그런 부분을 지금 이게 들어옴으로써 진짜 순수한 복지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그래서 정부에서 2명을 더 추가를 내려준 사항입니다.
- 문 : 연구사는 생명환경연구소에 있는 분들입니까?
- 답 : 아닙니다. 지금 고성공룡박물관에 학예사가 한명 있습니다.
거기하고 남진아라고 탈박물관의 학예사 두 사람 있습니다.
- 문 : 학예사는 뭐니까?
- 답 : 학예사가 일반 별정직인데 거의 일반직으로 넘어가면 유사직렬이 연구직렬로 하는 게 맞아서 연구직렬로 그렇게 한걸로 봅니다.
- 문 : 그럼 생명환경연구소 있는 분들은?
- 답 : 거기에는 농업연구사가 별도로 있습니다.
- 문 : 그러면 이 연구사하고는 다릅니까?
- 답 : 연구직 내에 여러 분야가 있는데 그런 것 하고는 다른 사항입니다.
지금은 3명의 연구직이 일반직으로 있습니다.

7. 토 론 : 없음

8. 심사결과

- 2013. 11. 25.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채택